

진로취·창업운영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예술대학교의 재학생 및 졸업생들의 진로취·창업 지원을 위한 산학협력 추진, 정보교환, 방문홍보, 취업상담 등 정책 및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진로취·창업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우리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의 진로 취·창업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종합적 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

1. 진로취·창업지원 관련 정책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진로취·창업 관련 정규교과·비교과 개발, 운영에 관한 사항
3. 진로취·창업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취업 지도 교수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진로 및 취·창업관련 사안

제3조(활동) ① 학과별 취업 외부기관 방문 및 홍보 등과 관련한 운영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② 진로 취·창업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관과 협력을 모색한다. 취·창업 협력 활동의 결과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서울과 수도권 인근지역 기관
2. 우리 대학 졸업생이 상당수 취업한 기관
3. 향후 취업 가능성이 높은 기관
4. 중소기업청 지정 유망 중소기업 및 벤처업체

③ 취·창업 관련 기관과 협약 체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과장을 통해 사무처에서 협약을 진행할 수 있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생처장으로 하고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 약간 명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직원 1인을 간사로 둔다.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직자의 경우는 보직 기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보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